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결과보고

1992. 3. 7.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안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2월 26일

· 회부일자 : 1992년 2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76회 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1992. 3. 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김용덕)

가. 제안이유

도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유재산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도유재산의 취득 및 무상대부에 관한 계획

1) 취득재산

덕유감시초소 부지매입	2필지	2,176㎡
—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산 73-1 임야		1,707㎡
—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산 73 임야		469㎡

《 취득사유》

— 초소개축을 통한 근무환경개선
— 대청호 불법낚시 단속용이로 상수원 보호강화

2) 무상임대 재산

- 충청북도 체육고등학교 시설부지내 편입 도유지 2필지 2,758㎡
 - 청주시 사직동 798 운동장 750㎡ 중 510㎡
 - 청주시 사직동 798 운동장 2,603㎡ 중 2,248㎡

※ 건물 신축후 부지면적 비율에 의하여 건물 기부채납 조건부 무상대부

《 취득사유 》

- 학교시설 편입 도유지 무상대부를 통한 학교설립 실현으로 체육인재 양성
- 체육인재 양성을 통한 도위선양

3.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정천헌)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 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 청원군 문의면 소재 임야을 매입코져 하는것은 감시초소 건축부지로 사용코져 하는 것으로서 본 초소는 대청호 호반에 위치하고 있어 대청호 주변의 환경정화및 불법 낚시꾼의 단속이 용이하여 청주시, 청원군 일원에 공급되는 생활용수 공급원인 대청댐 상수원의 수질오염도 방지할수 있으며

- 충북고등학교 시설부지내 편입 도유지의 임대건은 동 부지를 충청북도교육청에 무상으로 임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하여 체육고등학교 건물을 신축 운영케 함으로서 우수한 체육인 양성을 통한 충청북도 도민의 공지를 높여주는 한편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학교시설에 편입된 도유지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기부채납조건부로 (충청북도 공유재산조례 제20조) 임대조치 하는것이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적정을기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4. 질의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없음
6. 심사결과 : 도원안대로 의결 (참석 9인, 찬성 9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